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905호 2023. 3. 29.(수)



선	기관의 장
결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761호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762호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7
거창군 조례 제2763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거창군 조례 제2764호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거창군 조례 제2765호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26
거창군 조례 제2766호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1
거창군 조례 제2767호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7
거창군 조례 제2768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61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45
거창군 규칙 제1362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9
거창군 규칙 제1363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4
거창군 규칙 제1364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8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39호	거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61
거창군 고시 제2023-40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70
거창군 고시 제2023-41호	도로명주소 고시	7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3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761호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교육기관”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술시장 선도를”을 “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기관”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드론 체험 및 교육)”을 “(드론 교육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민”을 “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실시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u>교육기관</u>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u>기술시장 선도를</u>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p>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u>교육기관</u>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u>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u>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u>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u>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p>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u>기관·법인 또는 단체</u>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u>군민</u>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u>실시</u>할 수 있다.</p> <p>② <u>군수는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7조(드론 교육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u>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u>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u>할</u> 수 있다.</p> <p>② <u>군수는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2) 드론 교육에 드는 경비 지원

나. 관련조문

-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5조)
- 2) 드론 교육 및 지원(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군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3년)

1. 학생대상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0천원
2.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30,000천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류 현 복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3
----------	---------

제출연월일	2023. 2.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드론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드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대상 확대함(안 제5조)

1) 드론 교육기관 ⇒ 드론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

나.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교육경비 지원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40,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 31.~2.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3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762호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한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거창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 시책 및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훈련
4.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과 지원
5. 농촌 일자리의 홍보와 정보제공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와 활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영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 농작업의 구인·구직 확대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확보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농업인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 나. 농촌인력 증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표준안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운영

②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2. 농촌인력난 해소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시 필요한 비용
- ② 군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
 - 나.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
 3. 내국인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 나.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
- 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에 드는 비용
 3. 감염병 방역 및 격리 비용,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지원 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시고용인력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본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나. 관련조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안 제1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00	300	300	300	300	1,5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연 300백만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류 현 복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4
----------	---------

제출연월일	2023 2.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만성화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 등에게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거창군 농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정함(안 제4조)
- 다.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기능·구성 등을 정함(안 제5조~제11조)
- 라. 농촌인력중개센터 기능 등을 정함(안 제12조)
- 마. 농촌인력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13조)
- 바. 지원 신청 등을 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300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3.~2.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3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763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하여”를 “통하여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창업자금: 사업장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 나.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자지원
2. 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
보증 수수료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③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준 확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호,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p> <p>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p> <p>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p> <p>가. <u>창업자금: 사업장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u></p> <p>나. <u>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u></p>
<p>제4조(지원·제외 대상) ① 군수는 관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u>창업자금: 가게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u></p> <p>2. <u>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u></p> <p>3. <u>소상공인이 이차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u></p> <p>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p>	<p>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u>이자지원</u></p> <p>2. <u>소상공인이 이차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u></p> <p>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p>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2.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④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은 제1항의 이차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이차지원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2.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차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이차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③ 이차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p><u>융자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 이자</u></p> <p>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p> <p><u>제7조(지원 절차) ①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u></p> <p><u>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라 지원기준 확대</u></p> <p>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p> <p><u>제7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u> <u>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소상공인 이자지원 범위 확대

나. 관련 조문: 소상공인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합계
군비	192	384	384	384	384	1,728

3. 관련 의견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이자지원

1) 2023년: 융자액 48억(출연금의 12배)×4퍼센트=192백만원

2) 2024년: 384백만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 정 희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5
----------	---------

제출연월일	2023. 2.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제때 탄력적 지원을 위하여 이차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특례보증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정의 인용 상위법령 변경(안 제2조)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나. 이차지원에 대한 정의 구체화(안 제2조)

다. 이차지원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안 제5조)

라. 특례보증 신설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3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60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2. 1.~2023. 1.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3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764호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를 “거창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를 “마을회관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이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중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을 “마을 회관”으로 각각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2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시설물의 종류) 이 조례에서 관리하는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거용 건물 2. 놀이터, 쉼터 등 마을 휴게 시설물 3. 공동 창고, 공동 주차장 등 마을 편의 시설물 4. 기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p>제3조(시설물의 관리) ① <u>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은 마을 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u> ② <u>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4조(지도·감독) ① <u>군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 ② <u>군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5조(지원대상) <u>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1천만 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u></p>	<p>거창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마을회관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마을회관</u>”이란 마을 주민들이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제3조(시설물의 관리) ① <u>마을회관은 마을 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u> ② <u>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4조(지도·감독) ① <u>군수는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 ② <u>군수는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5조(지원대상) ① <u>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2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u></p>

<신 설>

제6조(사업의 신청) ①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을 이장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신청) ①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을 이장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1
----------	---------

발의일자	2023. 2. 27.
발 의 자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함

나. 지원대상을 마을공동이용시설물에서 마을회관으로 변경(안 제2조~제5조)

다. 지원금액을 확대함(안 제5조)

1) 원칙: 1천만원 이내 ⇒ 2천만원 이내

2) 예외: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라. 준용, 시행규칙 삭제(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24.~3. 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3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765호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재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재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채취 또는 가공되는 석재 및 석재제품의 판매·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석재사업자의 책무) ① 석재사업자는 우수 석재 및 석재제품을 채취·가공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석재사업자는 업체 간 상호 협력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며, 부조리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석재산업단지
2. 석재전시판매센터 등 판매시설
3. 석재 기능교육관 등 석재기술 보급 또는 연구·개발 시설
4. 석재를 활용한 공원 등 전시 및 휴식 공간
5.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석재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축제 등의 개최 및 참가
2. 석재산업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환경 개선
3. 석재사업장의 시설 개선
4.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
5. 쇄골재용(碎骨材用) 석재의 군외 운반
6.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비용,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쇄골재용(碎骨材用) 석재의 군외 운반비용
- 나. 관련 조문: 재정지원(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합계
군비	100	100	100	100	100	500

3. 관련 의견

석재 채취업 및 가공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비용 지원
 - 가. 채석 및 가공 업체 30개 × 1,000천원 = 30,000천원
- 2.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쇄골재용(碎骨材用) 석재의 군외 운반비용 지원
 - 가. 채석업체 7개 × 10,000천원 = 70,000천원

작성자 산림과장 강 신 여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의안 번호	2023-16
----------	---------

제출연월일	2023. 2.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내 3대 화강석 채석 산지인 거창군의 석재산업 발전과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및 석재 채취업 및 가공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군수의 책무, 석재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을 정함(안 제6조)

라.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7조)

- 1) 석재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 2) 석재산업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환경 개선
- 3) 석재사업장 시설 개선
- 4)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
- 5) 쇄골재용(碎骨材用) 석재의 군외 운반
- 6)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0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 20.~2.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3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766호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군민이 정원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정원사 육성 등) ① 군수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한 지식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 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 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 전문가 또는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간판 등 홍보물 설치 및 정원 교육 지원

나. 관련 조문

- 1)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안 제4조)
- 2) 정원산업의 육성 지원(안 제5조)
- 3) 시민정원사 육성 등(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합계
균비	20	20	20	20	20	10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3년도 총예산 20백만원
2. 간판 등 홍보물 지원: 15백만원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백만원

작성자 산림과장 강신여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3-17
----------	---------

제출연월일	2023. 2.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생활 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정원 개방 등의 활동 장려, 시민정원사 육성 및 활용, 정원 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을 정함(안 제4조)

-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정원문화 관련 교육,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
- 2)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장려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다. 정원산업의 육성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보급·관리, 기술지도 및 교육, 정보교류 및 협력,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등
- 2) 정원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라. 시민정원사 육성 등을 정함(안 제6조)

- 1) 시민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위탁 운영
- 2) 시민정원사 교육에 드는 경비 지원

마. 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지원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제18조의8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2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1.~2.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3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767호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 이경우 위촉 위원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명”을 “7명”으로 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u>한다.</p> <p>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u>한다</u>.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2명 3. 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互選)</u>한다.</p> <p>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u>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u>7명</u> 3. 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p>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p>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p>

현 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p> <p><u>제9조의3(위원의 해촉)</u>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8
----------	---------

제출연월일	2023. 2.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8조)

1) 위원 수: 15명 이내 ⇒ 20명 이내

2) 위촉위원 중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 대표: 2명 ⇒ 7명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제9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2.~2.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3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768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군”이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u>거창군</u> (이하 “<u>군</u>”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p>	<p><u>제3조의2(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군수</u>는 거창군(이하 “<u>군</u>”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u>군</u>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p>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9
----------	---------

제출연월일	2023. 2.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일 경우 수영장 사용료 등을 면제하여 어린이가 물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1)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 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5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 20.~2.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3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61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군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 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안보전화·일반전화·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해야 한다.

제38조 조 제목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을 “(직원비상 소집대상의 정비·보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6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을 “제1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원비상 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u> 군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u>숙직 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u> 다만, <u>일직·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하루를 지정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u></p> <p><u>제28조(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 한다.</u> <u>② 비상근무 상황실이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치안자동:</u> <u>2. 일반전화: 940-3000</u> <u>3. 행정전화: 가. 당직실: 3222 나. 당직사령: 3222</u></p> <p><u>제38조(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u> <u>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u> <u>② 군수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한 명을 지정하여야 한다.</u></p>	<p><u>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u> 군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u>당직 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u> 다만, <u>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u></p> <p><u>제28조(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안보전화·일반전화·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해야 한다.</u></p> <p><u>제38조(직원비상 소집대상의 정비·보완)</u> <u>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직원비상 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u> <u>② 군수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한 명을 지정하여야 한다.</u></p>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3-13
----------	---------

제출연월일	2023. 3. 10.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당직근무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현행 5일에서 10일로 휴무일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 휴무일 확대함(안 제5조)

- 1) 현행: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 2) 변경: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

나. 용어 및 인용 조문 등 정비함(안 제22조·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2)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14.~3. 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3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62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시행”을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지원범위 등) 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금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함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범위는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기준에서 최대 0.5퍼센트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자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3조제2호 중 “이차지원”을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제4조제3항”을 “제5조제2항”으로 “이차지원”을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조(이자지원 신청 절차) 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이차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상공인 이차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p>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지원 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지원범위 등) 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이차지원의 지원 범위·금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차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함 <p>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특별 지원범위는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기준에서 최대 0.5퍼센트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특례보증 및 이차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차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p> <p>② 조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p>

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차지원금의 지급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차지원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차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자 심사)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심사 순위는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부 금액), 사업체 최초 등록일자, 거창군 거주 연수 순으로 한다.

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차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삭 제>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3-5
----------	--------

제출연월일	2023. 2. 20.
제 출 자	경제기업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이차지원 및 착한가격업소 특례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이차지원의 지원범위 규정 및 지원 금액·기간을 확대

- 가) 범위: 5천만원 이내의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차
- 나) 금액

(1) (현행 조례 제5조) 연 2.5퍼센트이내의 이차

(2) (변경)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차

다) 기간: 1년 이내 ⇒ 2년 이내

2) 착한가격업소 특례지원 확대

가) (현행 조례 제6조) 최대 3퍼센트 이내 지원

나) (변경) 최대 0.5퍼센트 이내 추가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근거: 「지방자치법」 제29조,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60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2. 1.~2023. 1.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3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63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목욕 및 이용·미용의 비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원)

구분		1분기/ 1명당	2분기 /1명당	3분기/ 1명당	4분기/ 1명당
지원 금액	목욕 및 이용· 미용의 비용	<u>63,000</u> 54,000	<u>63,000</u> 54,000	<u>63,000</u> 54,000	<u>63,000</u> 54,000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효도권 이용 확인대장

연번	효도권 이용일	효도권 이용업소		국가유공자			비고
		상호	대표	이름	생년월일	남/여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효도권(목욕 및 이용·미용의 비용) 지원금 증액

나. 관련 조문: 효도권 및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기준(안 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138,600	138,600	138,600	138,600	138,600	693,000

3. 관련 의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에게 효도권(목욕 및 이용·미용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효도권 지원: 2,200명 * 63,000원 = 138,600천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3-12
----------	---------

제출일자	2023. 3. 10.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에게 목욕비와 이미용 비용의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위생적이고 인간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욕 및 이용·미용의 비용 지원금액 확대(안 별표)

- 1) 현행: 분기 1명당 54,000원
- 2) 변경: 분기 1명당 63,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9조
-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 3)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18,800천원 확보 + 19,8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14.~3. 7.

나) 예고결과: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3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64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어린이 수영교실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미취학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 등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일 경우에는 수영장의 사용료와 강습비를 면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p>	<p><u>제1조의3(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어린이 수영교실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u></p> <p><u>② 미취학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 등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일 경우에는 수영장의 사용료와 강습비를 면제한다.</u></p>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3-10
----------	---------

제출연월일	2023. 2. 20.
제 출 자	체육시설사업소장

1. 제안이유

수시로 변경가능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으로 조례에서 위임된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대상 및 사용료 및 강습비 면제대상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을 신설함(안 제1조의3)

- 1) 수영교실 대상: 6세~12세 어린이
- 2)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 면제대상: 미취학 6세 어린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 20.~2.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 - 39호

거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1. 하수도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추진한 「거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6581(2022. 12. 15)호로 승인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거창군 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2023. 3. 29.

거 창 군 수

□ 기 본 목 표

-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최상위 행정계획 수립
- 하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 거창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포함) 확충 및 개량계획 수립, 하수관거 확충 및 개량·보수·조사 계획 수립
- 하수도 대장작성·보완

□ 변경 승인 주요사항

- 계획의 범위
-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 계획인구
- 하수처리구역
- 하수처리인구 및 하수도보급률
- 공공하수처리시설별 계획
- 하수관거 계획
- 재정계획

거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 인 내 용

I. 기본계획 개요

1. 목 적

거창군에 대한 “거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을 통해 기 수립된 상위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수도시설의 완벽한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하수도 정비에 필요한 각종 조사와 분석을 시행하여 하수도의 계획적인 시설 및 관리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시설 계획과 사업시행을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의 낭비를 막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위 치

- 거창군 행정구역을 포함한 거창군 하수도 관리구역 전역

3. 범 위

- 공간적 범위 : 거창군 행정구역 전체 (면적 : 803.17km²)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40년(5개년 단위 4단계)

구 분	목표연도	시행단계
1단계	2025년	2021 ~ 2025년
2단계	2030년	2026 ~ 2030년
3단계	2035년	2031 ~ 2035년
4단계	2040년	2036 ~ 2040년

II. 변경 승인 내용

1. 계획의 범위

○ 기본계획수립 연혁

당 초	변 경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17년 4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22년 12월)

○ 목표연도

구 분	기준년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기 간	2019년	2021~2025년	2026~2030년	2031~2035년	2036~2040년
목표년도	-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 기본계획 수립지침 기준

금회 「거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에 있어, 환경부 지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2020.05.18)」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하수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관련내용이나 중요한 변경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다.

○ 과업대상지역

2019년말 기준 거창군 1개읍·11개면으로 기존 하수도시설의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각종 하수도시설과 관련 시설의 확충 및 보완을 위한 종합적인 하수도시설의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총면적 803.17km²인 거창군 전 구역을 계획대상으로 하였다.

3. 기본계획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1단계 (2020년)	2단계 (2025년)	3단계 (2030년)	4단계 (2035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1. 배수구역면적(km ²)	803.17				803.17					
2. 배수구역수(개소)	12				12					
3. 처리구역면적(km ²)	21.14				21.80					
4. 처리구역수(개소)*	공공하수도 3개소, 소규모하수도 26개소				공공하수도 3개소, 소규모하수도 28개소					
5. 계획장래인구(인)	64,907	63,849	62,552	61,286	62,863	60,780	58,696	56,613		
6. 계획처리인구(인)	55,579	55,202	54,104	53,020	56,641	54,806	52,962	51,129		
7. 하수도보급률(%)	85.6	86.5	86.5	86.5	90.1	90.2	90.2	90.3		
8. 일최대 하수량 원단위 (1/인·일) (일최대)	생활 오수	거 창 업 가 조 면 위 천 면	325	324	323	323	332	332	332	
	소 규 모		368	366	366	365	282	282	285	
			270	270	270	270	269	269	269	
			182	182	182	182	154~344	154~344	154~344	
		지하수유입	10%	10%	10%	10%	10%	10%	10%	
9. 일최대 계 획 하수량 (m ³ /일)	계		23,667	23,532	23,183	22,839	24,679	24,061	24,432	22,819
	거 창	소 계	18,330	18,115	17,771	17,479	19,790	19,281	18,771	18,262
		생 활 오 수	14,075	13,880	13,567	13,302	15,099	14,636	14,173	13,710
		지하수유입	1,408	1,388	1,357	1,330	1,510	1,464	1,417	1,371
		지하수사용	2,343	2,343	2,343	2,343	2,378	2,378	2,378	2,378
		공 장 폐 수	61	61	61	61	-	-	-	-
		연 계 처 리	191	191	191	191	152	152	152	152
		기타오수**	252	252	252	252	651	651	651	651
	가 조	소 계	3,309	3,422	3,414	3,405	2,538	2,498	2,458	2,428
		생 활 오 수	1,336	1,417	1,386	1,356	918	881	845	817
		지하수유입	134	142	139	136	91	88	84	82
		지하수사용	205	205	205	205	413	413	413	413
		공 장 폐 수	756	756	756	756	950	950	950	950
		관 광 오 수	878	902	928	952	166	166	166	166
	위 천	소 계	590	581	572	563	593	579	565	551
		생 활 오 수	395	387	379	371	317	305	292	279
		지하수유입	40	39	38	37	32	30	29	28
지하수사용		-	-	-	-	-	-	-	-	
관 광 오 수		155	155	155	155	244	244	244	244	
소규모(소계)		1,438	1,414	1,426	1,392	1,758	1,703	1,638	1,578	
계		26,930	26,930	26,930	26,930	27,205	27,205	27,205	27,205	
10. 단계별 시설계획 (m ³ /일)	공 공	소 계	25,100	25,100	25,100	25,100	25,100	25,100	25,100	25,100
		거 창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가 조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위 천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소규모(소계)		1,830 (26개소)	1,830 (26개소)	1,830 (26개소)	1,830 (26개소)	2,105 (28개소)	2,105 (28개소)	2,105 (28개소)	2,105 (28개소)

주) 1) * : 처리구역 면적 및 개소는 금회 소규모하수도 계획(병곡, 수옥)이 반영된 사항임.

2) ** : 기타오수 : 거창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교정시설 수용인원에 대한 오수량

3) 금회 지하수사용량 : 실제 지하수사용량 자료 조사 결과에 의해 산출

4. 거창군 계획인구

구 분	2019년 (기준년도)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2040년 (4단계)
장래계획인구(인)	62,730	62,863	60,780	58,696	56,613
자연적 인구(인)	62,730	59,922	57,839	55,755	53,672
사회적 인구(인)	-	2,941	2,941	2,941	2,941

5. 하수처리구역

구 분	당 초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2040년 (4단계)
거창군 전체(km ²)	21.14	21.8	21.8	21.8	21.8
공공하수도(km ²)	16.43	15.01	15.01	15.01	15.01
소규모하수도(km ²)	4.71	6.79	6.79	6.79	6.79

6. 거창군 하수처리인구 및 하수도 보급률

구 분	2019년 (기준년도)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2040년 (4단계)
거창군 계획인구(인)	62,730	62,863	60,780	58,696	56,613
거창군 처리인구(인)	54,123	56,641	54,806	52,962	51,129
하수도 보급률(%)	86.3	90.1	90.2	90.2	90.3
공공하수처리시설	46,961	49,917	48,345	46,769	45,199
거창 STP	41,641	45,481	44,086	42,689	41,293
가조 STP	3,889	1,180	1,133	1,085	1,038
위천 STP	1,431	3,256	3,126	2,995	2,868
소규모하수처리시설	7,162	6,724	6,461	6,193	5,930

7. 공공하수처리시설별 계획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중대규모, 500m³/일 이상)

○ 거창 공공하수처리시설

구 분			현재 (2019년)	변 경				비 고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처리구역 면적(km ²)			8.160	8.790	8.790	8.790	8.790	
하수처리 인구(인)			41,641	45,481	44,086	42,689	41,293	
시설용량(m ³ /일)			14,000	19,000	19,000	19,000	19,000	
관거 연장 (km)	분류식	오수	147.042	150.077	150.077	150.077	150.077	
		우수	137.594	137.594	137.594	137.594	137.594	
	합류식		0.525	0.525	0.525	0.525	0.525	

○ 가조 공공하수처리시설

구 분			현재 (2019년)	변 경				비 고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처리구역 면적(km ²)			6.680	4.560	4.560	4.560	4.560	
하수처리 인구(인)			3,889	1,180	1,133	1,085	1,038	
시설용량(m ³ /일)			5,500	5,500	5,500	5,500	5,500	
관거 연장 (km)	분류식	오수	58.321	59.470	59.470	59.470	59.470	
		우수	23.101	23.101	23.101	23.101	23.101	
	합류식		-	-	-	-	-	

○ 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구 분			현재 (2019년)	변 경				비 고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처리구역 면적(km ²)			1.770	1.660	1.660	1.660	1.660	
하수처리 인구(인)			1,431	3,256	3,126	2,995	2,868	
시설용량(m ³ /일)			500	600	600	600	600	
관거 연장 (km)	분류식	오수	16.749	16.749	16.749	16.749	16.749	
		우수	14.239	14.239	14.239	14.239	14.239	
	합류식		-	-	-	-	-	

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계획(500m³/일 미만)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기존운영:26개소, 금회신설:2개소)

구 분	기준년도 (2019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비 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6개소	28개소 (신설:2)	28개소	신설 : 병곡, 수옥

- 신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개요

구 분	시설용량 (m ³ /일)	처리구역 (ha)	처리인구 (인)	세대수 (가구)	관거연장 (m)	목표연도 (단계별)
병곡(북상면)	240	13	130	90	5,677	2025년(1단계)
수옥(신원면)	55	11	163	132	3,112	2025년(1단계)

8. 하수관거계획

○ 오수관거 신설

구 분	계 (m)	오수관거 신설(m)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23,378	23,378	-	-	-		
공공	소계	34,141	3,035	-	-	-	
	거창	22,568	3,035	-	-	-	처리구역확대
	가조	7,768	1,149	-	-	-	처리구역확대
	위천	3,805	-	-	-	-	
소규모	소계	19,194	19,194	-	-	-	
	원동	1,368	1,368	-	-	-	처리구역확대
	용초	2,049	2,049	-	-	-	처리구역확대
	갈계	1,395	1,395	-	-	-	처리구역확대
	병곡	5,677	5,677	-	-	-	신설
	진산	4,919	4,919	-	-	-	증설
	무촌	674	674	-	-	-	처리구역확대
	수옥	3,112	3,112	-	-	-	신설

○ 우수관거 개량

구 분	계 (m)	우수관거 개량(m)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20,502	-	-	12,001	8,501	
공공	소계	16,813	-	-	8,312	8,501
	거창	14,661	-	-	8,312	6,349
	가조	1,526	-	-	-	1,526
	위천	626	-	-	-	626
소 규 모	3,689	-	-	3,689	-	

○ 오수관거 개량

구 분	계 (m)	오수관거 개량(m)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6,680	-	-	4,490	2,190	
공공	소계	5,606	-	-	3,416	2,190
	거창	3,416	-	-	3,416	-
	가조	1,942	-	-	-	1,942
	위천	248	-	-	-	248
소 규 모	1,074	-	-	1,074	-	

○ 우·오수관거 보수

구 분	굴착보수(m)				비굴착보수(m)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계	531	531	-	-	342	342	-	-	
공공	거창	92	92	-	-	98	98	-	-
	가조	268	268	-	-	74	74	-	-
	위천	171	171	-	-	170	170	-	-

9.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계획

구 분	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m)				비 고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합 계	16,769	16,769	-	-	-	
거 창 공 공	계	16,769	16,769	-	-	-
	강북	8,534	8,534	-	-	-
	강남	1,518	1,518	-	-	-
	강동	6,717	6,717	-	-	-

10. 재 정 계 획

○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총	계	96,276	31,073	2,948	54,914	7,341	
시 설 비	합	86,522	26,752	2,591	50,738	6,441	
	하수 처리 시설	소 계	9,678	6,486	2,591	243	358
		공공하수처리시설	2,283	1,439	243	243	358
		소 규 모 하수처리시설	7,395	5,047	2,348	-	-
		분뇨처리시설	-	-	-	-	-
	하수 관로	소 계	76,844	20,266	-	50,495	6,083
		우 수 관 로	52,020	-	-	47,633	4,387
		오 수 관 로	20,628	16,070	-	2,862	1,696
		배 수 설 비	3,338	3,338	-	-	-
		중 계 펌 프 장	737	737	-	-	-
		노 후 하 수 관 로 정 밀 조 사	121	121	-	-	-
시 설 부 대 경 비	소 계	9,488	4,055	357	4,176	900	
	설 계 비	4,165	1,455	123	2,282	305	
	공 사 감 리 비	5,011	2,469	220	1,752	570	
	시 설 부 대 비	312	131	14	142	25	
용 지 보 상 비		266	266	-	-	-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9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3. 29.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3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가조면	변경 전	용전1길	가조면 수월리 789 (용전1길 50)	-	도면참조	1	없음	종속구간 생성	직권
		변경 후	용전1길	가조면 수월리 789 (용전1길 50-1)	가조면 수월리 929-1 (용전1길 50-52)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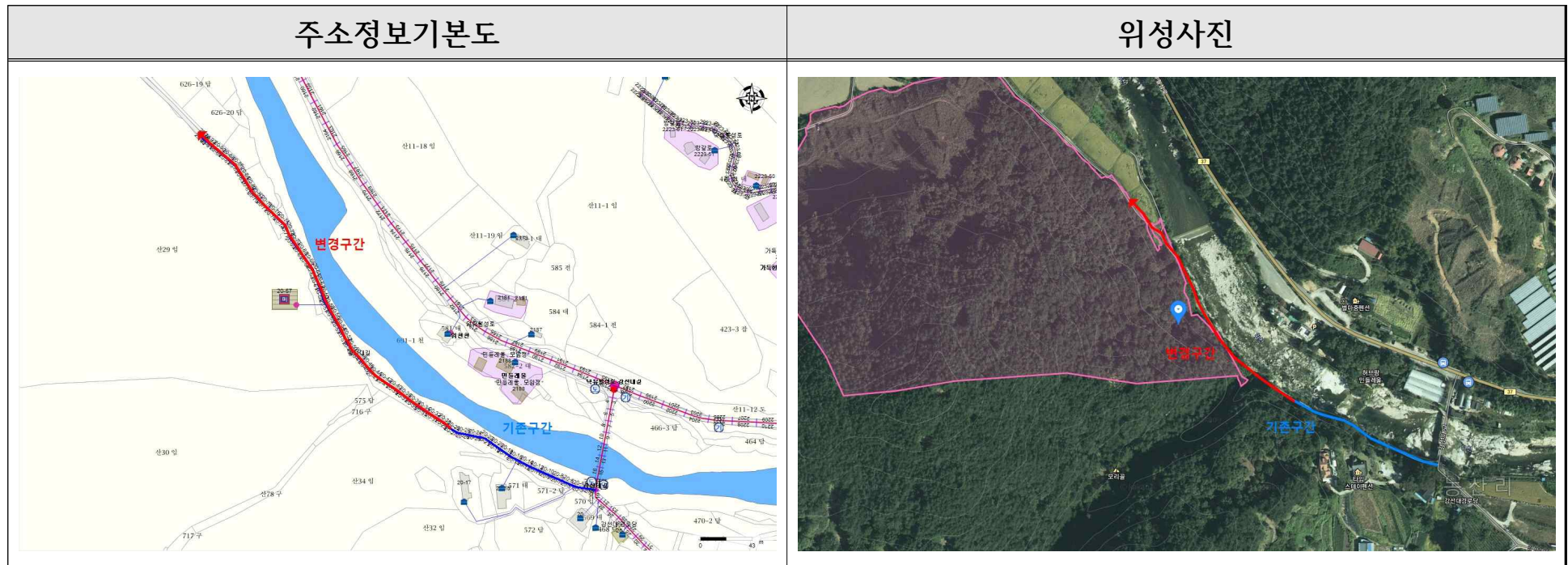
주소정보기본도



위성사진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2	북상면	변경 전	강선대길	북상면 농산리 467 (강선대길 20-1)	북상면 농산리 산34 (강선대길 20-28)	도면참조	3	없음	종속구간 변경	직권
		변경 후	강선대길	북상면 농산리 467 (강선대길 20-1)	북상면 농산리 626-20 (강선대길 20-94)	도면참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29.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강선대길 20-57 등 5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41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3-534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 교정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23-27호(2023. 2. 23.)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 교정시설)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교정시설)
 - 명 칭 :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 A=157,579.2㎡
 - 사업의 규모 : 건축면적 A=11,384.2㎡, 연면적 19,835.7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1동
 - 성 명 : 법무부장관
5. 사업시행기간 : 2014. 11. 27. ~ 2023. 6. 30.
6.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방소멸대응 인구활력 아이디어 공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군 특성에 맞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인구활력 사업(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거창군수

1. 공모명 : 지방소멸대응 인구활력 사업(아이디어)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23. 3. 27. ~ 4. 20. (25일간)
- 공모자격 : 거창군민
- 공모주제 : 거창군 정주인구 증가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사업(아이디어) 전반

<예시> 50억원 이상이 주어진다면, 거창군의 인구활력을 위해 최우선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 * (하드웨어) 정주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 ** (소프트웨어) 인구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 주거·일자리·보육 등 청년층이 이주하여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귀농귀촌 은퇴자 유입, 생활인구 확대, 인구 감소 최소화, 저출산 극복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3. 참여방법 : 제안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제출

- 거창군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 : 군민참여-군민제안
- 방문·우편 :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전략담당
- 전자우편(E-mail) : dlwhdthq@korea.kr

4. 심사 및 시상

- 심 사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및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기준 : 시행가능성, 창의성, 능률성·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종합심사(100점만점)
- 결과발표 : 2023년 5월 중(거창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시 상(6명)

구 분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
선정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시상내역	상금 70만원 / 상장	상금 50만원 / 상장	상금 30만원 / 상장

5. 기타사항

- 응모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작 및 접수된 제안내용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거창군에 있음
- 본인 창안 아이디어가 아니거나, 국내사례 복사 또는 타 공모전 출품한 동일·유사한 내용은 통보 없이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에도 위반사실 발견 시 수상 전면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
- 중복으로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다수 분야에 다수 응모 가능하나,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및 상금 지급
- 선정기준 등급에 해당되는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전략담당(☎ 055-940-3692)

◇ 공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인건비,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제안대상 제외>
-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붙 임**제안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거창군 지방소멸대응 인구활력 아이디어 제안서			
수 신 : 거창군수			접수번호
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	<input type="checkbox"/> 제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이디어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모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퍼센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퍼센트)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에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중) 70g/m²)

(뒤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공모제안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정책제안을 하게 된 지역 여건 분석이나 문제점 등 제안 배경 기술)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개선방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 수혜자 유형 및 수혜내용 /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등) ※ 본 서식에 제안내용을 모두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추가 별지로 작성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제안된 정책 시행 시 기대되는 지역의 지방소멸 극복 효과 등 기술)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p>< 작 성 요 령 ></p> <p>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p> <p>② 제안종류 :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p> <p>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p> <p>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p> <p>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p> <p>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과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p> <p>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p>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거창군 지방소멸대응 인구활력 사업(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인구활력 사업(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자 접수, 심사, 선정 결과 발표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구활력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발표 등 공모전 추진 기간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상기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 및 발표 등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창군수 귀하